

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*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Y

현행	개정후	비 고
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	「하나인증서 서비스」 이용약관	
제 1 조 <생략>	제 1 조 <좌동>	
제 2 조 (용어의 정의)	제 2 조 (용어의 정의)	
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~9 <생략></p> <p>10. "서버저장형 인증서"라 함은 <u>인증서 발급 시, 인증서</u>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서버에 저장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말합니다.</p> <p>11~17<생략></p> <p>18."대체수단"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<u>식별 및</u>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서 및 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② <생략></p>	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~9 <좌동></p> <p>10. "서버저장형 인증서"라 함은 <<u>삭제</u>>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서버에 저장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말합니다.</p> <p>11~17<좌동></p> <p>18."대체수단"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<<u>삭제</u>>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서 및 연계정보,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② <좌동></p>	<p>서버저장형 인증서 재정의</p> <p>표현 일원화</p>
제 3 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	제 3 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	
<p>① 은행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가입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	<p>① 은행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가입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	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②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<u>이용자</u>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인증서 발급 앱,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의 영업점에 게시하고,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가입자가 <신설>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<u>적절한 방법으로</u>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	<p>②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<u>가입자</u>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인증서 발급 앱,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의 영업점에 게시하고,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가입자가 <u>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</u>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<u>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</u>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	주체 명확화 이의신청 방법 및 고지방법 추가
<p>④~⑤ <생략></p> <p>⑥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<신설>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④~⑤ <좌동></p> <p>⑥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<u>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</u>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이의신청 방법 추가
<p>제 4 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하나인증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(e-mail, 유선통화, LMS/SMS 등)합니다.</p>	<p>제 4 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)</p> <p>①~② <좌동></p> <p>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, 하나인증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(e-mail, 유선통화, LMS/SMS 등)합니다.</p>	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<u><신설></u></p> <p>1. 천재지변, <u>전산장애, 정전, 하나인증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신청 등 기술적으로 은행의 하나인증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</u></p> <p>2.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</p> <p>3. 가입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</p> <p>4.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</p> <p>5. 이 약관 및 하나은행 앱 관련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	<p>등)합니다. 다만, 은행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, 지체없이 사후 통지합니다.</p> <p>1. 천재지변, <u>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2.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</p> <p>3. 가입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</p> <p>4.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</p> <p>5. 이 약관 및 하나은행 앱 관련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	<p>통지방법 명확화</p> <p>사후통지 근거 작성</p> <p>구체적 사유 명기</p>
<p>제 5 조 (서비스 범위)</p> <p>①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갱신 발급, 폐지, 인증이력 조회,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<u><신설></u> 제공받습니다</p> <p>②~③ <생략></p>	<p>제 5 조 (서비스 범위)</p> <p>① 가입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, 재발급, 갱신 발급, 폐지, 인증이력 조회, 비밀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</p> <p>②~③ <좌동></p>	<p>조사 추가</p>
<p>제 6 조 <생략></p>	<p>제 6 조 <좌동></p>	
<p>제 7 조 (이용방법)</p> <p>① <u>가입자 신청은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고객으로</u></p>	<p>제 7 조 (이용방법)</p> <p><u><삭제></u></p>	<p>은행계좌, 앱 설치 인증서</p>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<u>"하나은행 앱"을 설치하고,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.</u></p> <p>①~②<생략></p> <p>③ 가입자는 하나은행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은행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, 신분증 진위확인, 계좌 인증을 통한 가입자 신원확인 및 가입자의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 단, 재외국민 등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원확인 방식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전자여권 및 전자여권 소유자의 얼굴인증을 통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④~⑥<생략></p> <p>⑦ 서버저장형 인증서의 경우,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<신설> 인증서를 은행의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는 필요 시 은행 서버에 저장된 <신설> 인증서를 가입자의 이용기기로 내려받아 하나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⑧ 기타 인증서 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'인증업무준칙 4.인증서 관리'를 따르며,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은 제 10 조를 따릅니다.</p>	<p>①~②<좌동></p> <p>③ 가입자는 하나은행 앱의 관련 메뉴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은행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, 신분증 진위확인, 계좌 인증을 통한 가입자 신원확인 및 가입자의 하나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 단, 재외국민 등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원확인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수행한 후 국내 전자여권 및 전자여권 소유자의 얼굴인증을 통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④~⑥<좌동></p> <p>⑦ 서버저장형 인증서의 경우,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은행의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는 필요 시 은행 서버에 저장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를 가입자의 이용기기로 내려받아 하나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⑧ 기타 인증서 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'인증업무준칙 4.인증서 관리'를 따르며,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은 제 10 조를 따릅니다.</p>	<p>발급 전제조건 삭제</p> <p>재외국민 신원확인 명식 명확화</p> <p>저장하는 정보 명확화</p>
<p>제 8 조 ~ 제 11 조 <생략></p>	<p>제 8 조 ~ 제 11 조 <좌동></p>	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제 12 조 (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지)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하나인증서 서비스"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·보수·업그레이드·점검·교체·통신장애·해킹.<u><신설></u>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.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. <u>정전</u>,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. <u>인증서가 있는 기기에서</u> 하나은행 앱을 삭제하는 경우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지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<u>은행이 인지한 경우</u> 2.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3. <u>인증서의 유효기간(3년)이 경과된 경우</u> 4.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<u>은행이 인지한 경우</u> 	<p>제 12 조 (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지)</p> <p>①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하나인증서 서비스"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·보수·업그레이드·점검·교체·통신장애·해킹.<u>정전</u>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. 제반 설비의 장애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. <u><삭제></u>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. <u>인증서를 하나은행 서버에 저장하지 않은 가입자가 하나은행 앱을 삭제하는 경우</u> <p>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지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<u>가입자 또는 제 3자의 신고, 행정기관의 통보,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</u> 2.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<u><삭제></u> 3.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<u>가입자 또는 제 3자의 신고, 행정기관의 통보,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</u> 	<p>폐지사유 명확화</p> <p>폐지사유 명확화</p> <p>폐지사유 명확화</p> <p>폐지사유 명확화</p>

현행	개정후	비 고
5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<u>은행이 인지한 경우</u>	4.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<u>가입자 또는 제 3 자의 신고, 행정기관의 통보,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</u>	폐지사유 명확화
6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<u>은행이 인지한 경우</u>	5.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는 사실을 <u>가입자 또는 제 3 자의 신고, 행정기관의 통보,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</u>	폐지사유 명확화
7. 가입자의 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이 변경된 것을 <u>은행이 인지한 경우</u>	6. 가입자의 휴대폰정보, 성명, 생년월일이 변경된 것을 <u>가입자 또는 제 3 자의 신고, 행정기관의 통보, 내부 이상징후 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</u>	폐지사유 명확화
8.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	7.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	제 12 조 제 3 항
9. <신설>	8. <u>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u>	제 3 호에서 이기
③ <u>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.</u>	③ <삭제>	
1. <u>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		
2. <u>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, 대체수단이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		
3. <u>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</u>		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4. <u>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</u></p> <p>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<u>3</u> 항에 해당되어 "하나인증서 서비스"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폐지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</p>	<p>③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<u>2</u> 항에 해당되어 "하나인증서 서비스"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폐지되는 경우,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지체없이 사후 통지합니다</p>	<p>③항 삭제에 따라 수정 통지 시점 명확화</p>
<p>제 13 조 ~ 제 14 조 <생략></p> <p>제 15 조 (가입자의 의무)</p> <p>① 가입자는 <u>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</u>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해야 하며, 생성된 인증서 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보관·관리해야 합니다.</p> <p>②~⑦ <생략></p>	<p>제 13 조 ~ 제 14 조 <좌동></p> <p>제 15 조 (가입자의 의무)</p> <p>① 가입자는 <삭제>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해야 하며, 생성된 인증서 정보가 분실·훼손 또는 도난·유출되지 않도록 보관·관리해야 합니다.</p> <p>②~⑦ <좌동></p>	<p>전자서명생성 방법 현행화</p>
<p>제 16 조 ~ 제 19 조 <생략></p> <p>제 20 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</p> <p>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</p> <p>② 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은행과 가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, 협의에서도</p>	<p>제 16 조 ~ 제 19 조 <좌동></p> <p>제 20 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</p> <p>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</p> <p>② 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은행과 가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.</p>	<p>준거법 관련 약관 내용 명확화</p>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<u>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③ <u>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가입자는 「전자서명법」 제 22 조에 따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 32 조에 따른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④ <u>제 2 항 및 제 3 항의 협의 또는 조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,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1 조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1 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<u>제 1 조 (시행일)</u></p> <p>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	

현행	개정후	비 고
<p>이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5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5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이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5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이 약관은 2025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p> <p><u>이 약관은 2026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 2 조 (경과조치)</u></p> <p><u>이 약관의 최근 개정 시행일 전 기존 앱 이용계약을 체결한</u> <u>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종전의</u> <u>약관을 적용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</u> <u>이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시행일 이후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.</u></p>	시행일 명기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	신규 앱 개발과 기존 앱 공존 기간 고려하여 경과조치 신설